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16
----------	-----

2019년 9월 2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5일, 김평남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평남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남자화장실 소변기 설치현황을 보면 소변기 간에 가림막(칸막이)이 없는 화장실이 많아, 감수성이 풍부한 10대 남학생들의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남학생들이 많이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임의로 규정되어 있는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칸막이)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여 남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의 규정인 남자화장실 소변기 칸막이 설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6호 개정)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5일 김평남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16호로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남학생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남자 공중화장실 30곳 중 10곳에 용변 중인 남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¹⁾
- 이러한 남성 변기의 가림막 미설치 문제는 일반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남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소변기의 가림막 설치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1) MBN뉴스, “허울 뿐인 대책...내부 보이는 남자화장실 여전”, 2019.08.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1375921>)

- 그러나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 가림막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소변기 47,934개 중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된 것은 전체의 10%인 4,794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약 90%에 달하는 소변기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²⁾
- 따라서 동 조례안은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초·중·고등학교 남학생 화장실 내 소변기에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남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4조제6호는 현재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때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³⁾
- 다만 조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변기 가림막의 설치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변기에 사용되는 “칸막이”와 소변기에 사용되는 “가림막”의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2)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각급학교 남자화장실에 설치된 소변기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 2019년 8월 19일부터 각급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임.

다만 본문에서 명시한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수치는 동 조례안의 비용추계시 사용한 수치를 이용한 것으로, 동 수치는 전체 소변기 숫자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화장실이나 화장실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한 숫자를 전체의 약 10%로 추정하여 산출한 수치로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수치라 할 수 있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개정, 2018. 1. 1 시행)

별표 3의2.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되, 바닥지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변기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안의 경우 규범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칸막이”를 “가림막”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부칙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의 부칙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의 설치 의무는 이미 상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 부칙에 3개월의 경과규정을 부여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⁴⁾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 08. 21.).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상위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구분에 따라 “소변기 칸막이”를 “소변기 가림막”으로 수정함.
- 이 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함.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3호의2, 제5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중화장실등이나 공중화장실등이 포함된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Ⅶ.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6
----------	-----------

제안연월일 : 2019년 9월 2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구분에 따라 소변기 “칸막이”를 “가림막”으로 수정함.
- 남성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의 의무설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 부칙의 시행일 중 경과규정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남자화장실 소변기의 “칸막기”를 “가림막”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6호).
- 부칙의 시행일 중 경과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6호 중 “칸막이”를 “가림막”으로 하고,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p> <p>1. ~ 5.</p> <p>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u>칸막이를 설치하여</u>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u>노력하여야 한다.</u></p> <p>7. · 8.</p>	<p>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u>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7.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생략)</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u>가림막을</u> 설치하여야 한다.</p> <p>7. · 8. (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이 조례는 <u>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u>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u> 공포한</u>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칸막이를 설치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생략)</p> <p>1. ~ 5. (생략)</p> <p>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u>칸막이</u>를 설치하여야 한다.</p> <p>7.·8. (생략)</p>	<p>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u>가림막</u>을 설치하여야 한다.</p> <p>7.·8. (현행과 같음)</p>
부 칙	부 칙
<p>이 조례는 <u>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u> 날부터 시행한다.</p>	<p>이 조례는 <u>공포한</u> 날부터 시행한다.</p>